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훈련기간 동안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대부해 드립니다.”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며, 훈련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 연간소득 2,400만원 초과자 제외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 연간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제외

▶ 대상훈련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4주(28일)이상의 훈련<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4주(32시간이상) 훈련>
※ 단, 훈련사이의 공백기간이 7일 이내 훈련은 합산하여 총 기간이 4주(28일) 이상인 훈련도 포함
※ 세부 훈련과정은 직업능력지킴이포털(HRD-net)에서 확인가능

비정규직 근로자 대부대상훈련

- ①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기술학원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전직실업자 대부대상훈련

-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
- ③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훈련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

▶ 대부한도 및 상환조건

대부한도	1인당 1천만원 이내 ※ 대부금액은 1인당 대부 한도내에서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결정
대부금지급	훈련수강 기간동안 월별 1백만원 한도 분할대부 ※ 분할대부기간동안 취업, 훈련종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등의 사유 발생시 분할대부 실행 중지
대부금리	연 1.0% ※ 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선공제
상환기간	1년거치 3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 중 신청자 선택 ※ 매월균등분할상환

▶ 구비서류

공통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국세청)
전직실업자	가족관계증명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국세청)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 신청 및 안내

신청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넷 신청 시(공인인증서필요)
절차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제출 → 대부대상자 결정 → 보증서 발행 → 1회차 대출실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2회차 이후 매월 15일 자동실행 (훈련실시여부, 자격변동여부 확인 후 결정)
대출	IBK기업은행(www.ibk.co.kr) → 개인뱅킹 → 대출메뉴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조회(보증서내역) → 대출신청(약정동의) ※ 기업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은행방문 후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가입 필요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자세한 안내 및 온라인 신청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용자 제도 안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 이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임

▶ 용자대상

용자종류	대 상
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노부모요양비 · 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무요건 :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30%이상 감소하여 월평균소득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소액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개인사정 및 사업구조상 이유로 월 소득이 30%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소득이 14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무요건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생계비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배우자 합산) 4,000만원 이하 근로자

▶ 용자요건 및 한도액

용자종류	용자요건	신청기한	한도액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는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또는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된 후 요양시설이용에 든 비용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1,000만원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모든 비용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1,000만원
장례비	① 근로자 본인, ② 배우자, ③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1,000만원
노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만 65세 이상 부모(신청일 이전 1년동안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1년동안 주거를 같이하면서 사실상 부양받고 있는 경우만 해당)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부모1인당 연300만원
자녀학자금	두 자녀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한부모 가정, 여성외박이 가정, 다문화 가정, 고등기술학교 재학중인 경우는 한 자녀 이상 가구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녀 1명당 연3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소속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임금이 현저히 감소한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 1. 경영상 조치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을 것 2.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대비 30%이상 감소	사유 진행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00만원 (감소임금 범위)
소액임금감소생계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 1.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였을 것 2. 용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대상자가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	가동중(휴업포함)인 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 용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이미 발생된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	1,000만원 (체불임금 범위)

▶ 용자상환조건

이 자	상환 기간	보증 방법
연 3.0%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단, 소액임금감소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 임금체불생계비 1.0%, 그 외 0.9%)

▶ 신청 및 안내

신 청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넷 신청시(공인인증서 필요)
절 차	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예비선정 → 서류제출(예비선정자에 한함) → 용자대상 결정 → 보증서 발생 → 대출실행(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대 출	IBK 기업은행(www.ibk.co.kr) → 개인뱅킹 → 대출메뉴 →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 조회(보증서내역) → 대출신청(약정동의) ※ 기업은행계좌가 없는 경우 은행방문 후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가입 필요



고객지원센터
1588-0075



자세한 안내 및 온라인 신청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